2023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안전 종합 계획』

2023. 3.

포 천 태 봉 초 등 학 교

목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Ⅰ. 학교안전계획 개요 ―― 1

1. 학교현황 ····· 1
2. 학교 안전 조직 ····· 2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7

Ⅱ. 학교안전 현황 ―― 10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10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14

Ⅲ.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20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 20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 23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 26
4.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방침 ····· 27

Ⅳ.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 35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 35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 36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 37

참고 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39
참고 2. 안전사고관리지침 해설서 ····· 42

PART I

학교안전계획 개요

1 학교현황

일반 현황

학교명	태봉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선로 8		
전 화	031-544-2261	홈페이지	http://www.tb.es.kr/
교 장	최**	학교안전책임관	김**

학생 및 교직원 현황 (2023. 3. 6. 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학급	합계
학교 현황	학급수	4	4	4	4	5	6	2	29
	학생수	115	96	110	112	122	149	(11)	704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39	4	19	1	0	63

비상대피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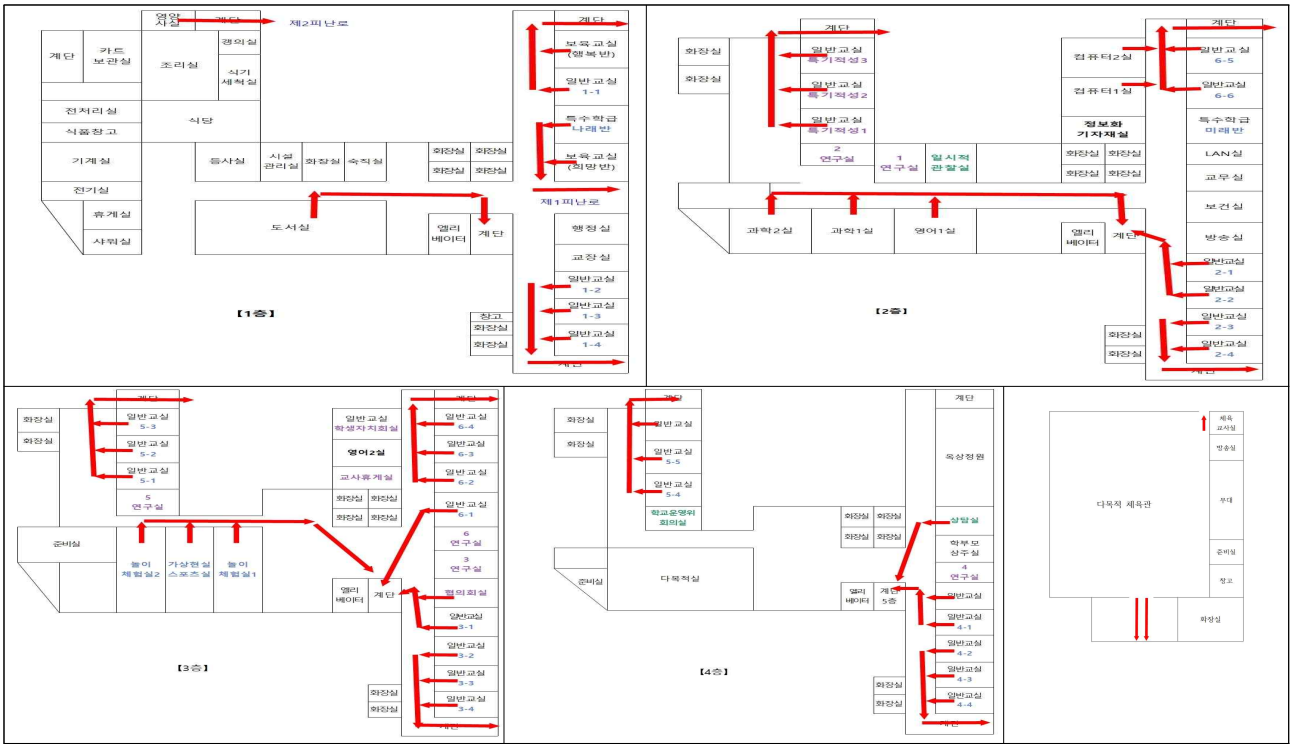

학교위치도

• 긴급차량 접근 경로

• 교무실 : 본관 2층
• 행정실 : 본관 1층

2 학교 안전 조직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대 책 반 장
교 장

대 책 부 반 장	(정보연계) ⇄	유관기관 협조
교 감(학교안전책임관)		소방서, 경찰서

현장대응반	교내지원반	행정지원반	외부지원
담당부서: 생활안전인권부, 보건교사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담당부서 : 행정실	▷ 교육지원청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보호자 연락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 수집(현장방문) -일지 작성 -사안보고서 작성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직원회의 개최 -학생현황 파악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학생 귀교 대책 수립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피해현황 파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	• 자문, 지원

학교안전 관련 업무분장

- 학교안전업무는 각 부서간 유기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교직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직 책		임 무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국민안전처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로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교무부장 안전인권부장 학년부장 안전인권부장 보건 안전인권부장 담임 보건(체육) 행정실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교무부장 학년부장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교무부장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전문상담 교사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협력지원 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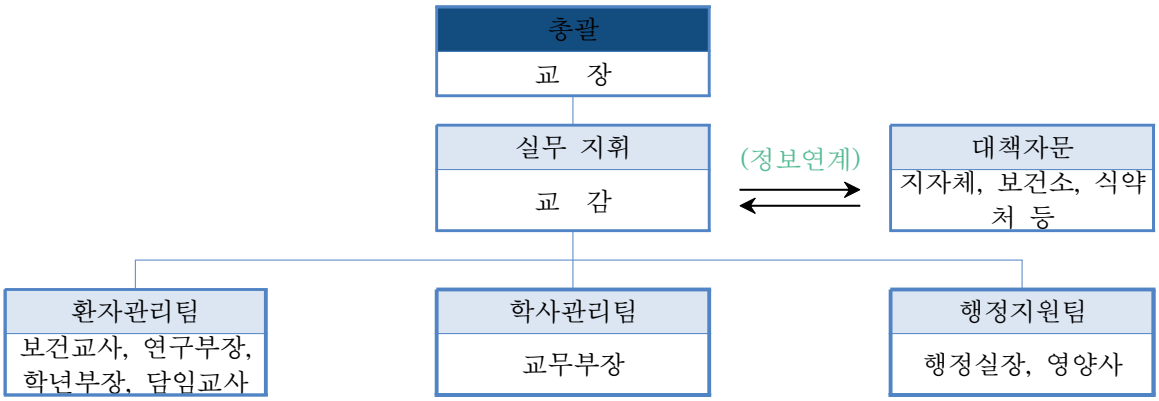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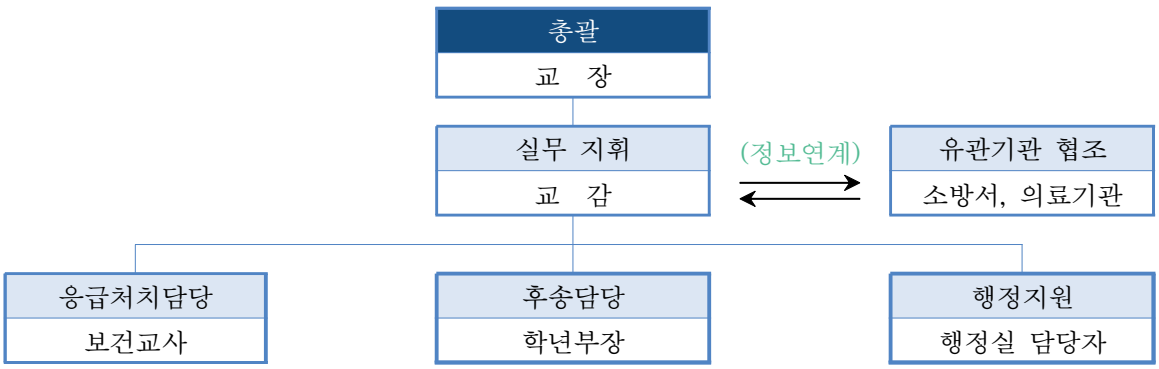

유관기관 협조체계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사전에 구축
- 지역 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처

번호	명 칭	전화번호	비 고
1	포천교육지원청	(야) 539-0017 539-0000	
2	포천시 재난종합상황실	538-2119	
3	포천경찰서	536-6112	

4	포천소방서	119	
5	한전 포천지점	539-0282	
6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878-0019	
7	KT 포천지점	531-0060	
8	5군단(제2672부대)	532-0113	
9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539-9472	
10	우리병원	542-0222	
11	강병원	535-2119	

○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

부 문	명 칭	전화번호	비 고
보안경비무인	에이디티캡스	1588-6400	
보안경비유인	캡스택	02-2285-5133	
학내망유지	제일	031-535-5851	
승강기유지보수	(주)대성IDS	02-2633-6466	
학교소독(저수조청소)	신우환경	031-533-7748	
전기안전관리	경기북부전기안전공사	031-541-9111	
가스	대륜E&S	1566-6116	
정수기유지관리	원봉(푸른기업)	031-877-3456	
소방	한누리소방	031-544-4119	
학교청소	인스크린	010-***-****	
급식방역	대한방역	031-848-5550	
음식물수거	청수환경	031-536-4509	
알리미서비스	루키스	1599-5800	
식자재 공급업체	농산 (경기친환경농산업)	070-4279-1438	
	김치 (청산김치)	031-832-4414	
	축산 (축협미트빌사업단)	031-533-6901	
	수산 (수협)	031-521-1159	
	공산 (경기 롯데)	070-4108-5386	
	공산 (태양)	031-828-0101	
	공산 (호명상사)	(070-7531-3749)	
보건	이메딕	1588-5120	의약품 및 사무용품구입처
보건	크린토피아(송우점)	031-543-3445	세탁소(이불.매트.베개)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안전사고 관리지침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사고 발생	→	상황 파악	→	상황 보고 (동시보고)
현장		학교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에서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학교 안전사고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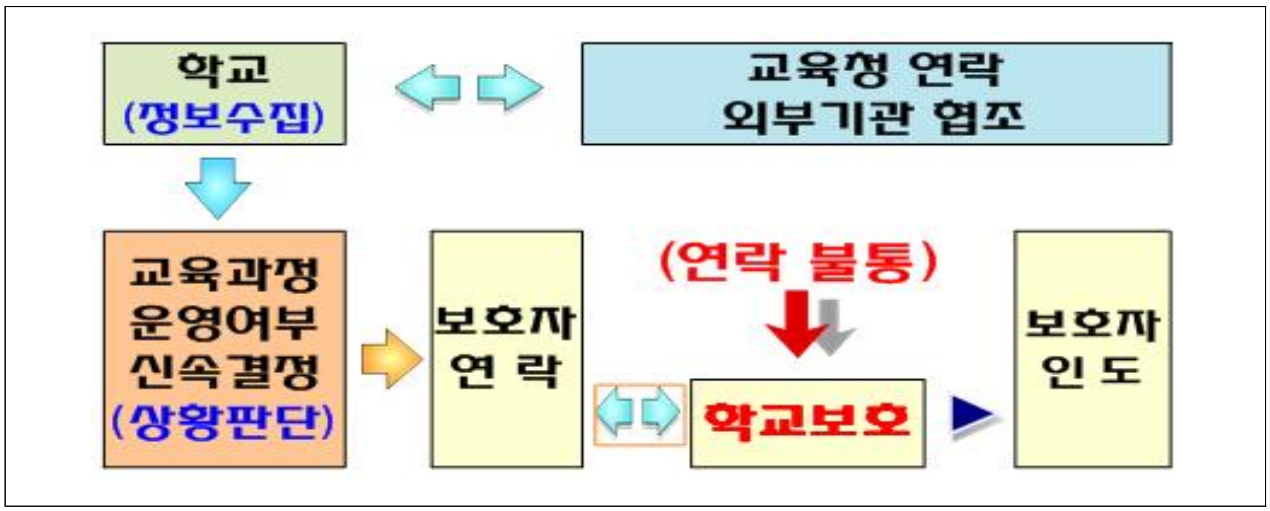

*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학생의 통학로 유실, 가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을 가정하여 대응.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학생을 직접 인솔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대 응	상 황	학교 상황대응
사 전 위 기 관 리	**체제정비** 학교사고 대책반 업무분장 **교육 및 훈련** 사고인식 및 대응능력강화 교원 대응능력 강화 **점검**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	- 상황시스템 가입 및 점검 - 유관기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성 - 상황별 행동대처 방법 세분화 - 상황별 대처요령 및 업무매뉴얼 숙지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육.체험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실시 - 안전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발생 시 위 기 관 리 1단계

사고발생

상황보고 ⇄ (정보연계) ⇄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 (정보연계) ⇄ 교육지원청 상황실

일일구이구조삼보고

1. 119 (5W1H)
2. 구조 및 구호
3. 보고

※ 화재 등은 소리를 질러 먼저 알려야 함

※ 현장 보존

학교장

1. 사고대책반 소집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결정→해결방안 지시
2.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통지, 협조요청

↑↓

교 감

1. 사고대책반 운영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확한 정보 종합 및 분석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교육청 보고 (상황전파시스템)
2.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

발생 시 위 기 관 리 2단계

현장대응반	교내지원반	행정지원반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보호자 연락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 수집(현장방문) -일지 작성 -사안보고서 작성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직원회의 개최 -학생현황 파악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학생 귀교 대책 수립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피해현황 파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
⇩	⇩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학생 관리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학부모 지원 요청 -긴급상황시 SNS발송 -가정통신문 발송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상담계획 수립	-추가 사고위험 여부 확인 -행.재정 지원대책 마련

⇩

복 구

학교 정상화 (사고종결 및 후속대책 수립)
- 사고관련 안전교육 (예방 및 훈련)

PART II

학교안전 현황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현황

6대 분야	16대 과제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2. 3. 기준	계획수립	
			○/×	미흡한 경우 향후대책
1.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교육활동 중) 위기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1. 학교 재난대응(사고현장 지휘소)의 역할, 책임을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하였는가? ※ 학교 교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포함	○	
		2. 학교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 보고 절차, 방법을 기술하였는가?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	○	
	2학교안전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3. 학교안전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학교안전책임관, 안전부장 운영 해야 함**	○	
		4.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3학교안전계획 수립.평가의 내실화	5. 법령에 정해진 절차, 기간을 모두 준수 하였는가? ※ 2월말까지 학·운·위 심의, 3월말까지 제출	○	
		6.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신규, 전입 교사, 1인 단독 수립(×)	○	
		7. 학교안전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누구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가? - 홈페이지 탑재, 로그인 없이 확인 모두 충족 시(○)	○	
		8.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6대 분야	16대 과제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2. 3. 기준	계획수립	
			○/×	미흡한 경우 향후대책
2.학교안전교육 내실화	1 경기도안전교육 과정의 안착	9.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교육부 고시 (2017-121)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었는가? ※ 2021학년도 학교안전교육 시간 33차시 → 융합교육정책과-1098(2021.1.29.)	○	
		10.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2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11. 수상안전(초등), 물놀이 안전, 실험.실습 안전, 체육활동에 대하여 학교안전계획에 포함되었는가? ※ 각 분야별 별도 지침·계획을 학교안전계획에 명시한 경우(○)	○	
	3 교육공동체의 안전 대응 역량 신장	12.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모든 교직원은 3년(2021~2023학년도) 내, 15시간 이상의 안전연수 이수	○	
	4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13.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3.교육활동 안전 강화	1 방과후학교 및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14. 현장체험학습(진로체험, 수련활동, 수영수업 등) 안전대책으로 학년 또는 학급별로 비상배낭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구비 되어있는가?	○	
		15.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2 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16. 학교 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시)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 훈련	○	
4.학교 안전문화 확산	1 학교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	17. 학생 참여형 활동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예시)안전동아리, 안전캠페인 등	○	
	2 학교 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18.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19. 학교 안전주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20. 체육대회, 축제,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시 안전 사고예방 계획 및 행사 시작 전 참석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5.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성	1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	2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	
	2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2. 재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 배낭을 구성하여 비치하였는가?	○	
		23. 학교 CCTV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가? - 계획수립·홈페이지 게시 모두 다 충족 시 (○)	○	

6대 분야	16대 과제	평가지표[평가내용] ※ 2022. 3. 기준	계획수립	
			○/×	미흡한 경우 향후대책
6.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1 상담 및 치료 지원	24.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활용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생명존중 교육 계획을 수립 하였는가?	○	
		25.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포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2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활용	26.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3 안전사고 재발 방지	27.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방법, 교훈 등에 대해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있는가?	○	

전년도 학교안전교육 추진실적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2022년)

구분 /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1.3. ~ 2024.2	2021	41	23	64	27	15	42	65.62
	2022	41	23	64	41	23	64	100
	2023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2022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720	41	23	784	720	41	23	784	100	100

○ 안전영역별 · 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2022년)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계
기준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시간	12 이상		11 이상		8 이상		10 이상		6 이상		2 이상		2 이상		51 이상
2021년 코로나감축		10		9		3		5		5		0		1		33
교육과정 반영시수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계
1학년	1학기	59	27	2	12	0	11	3	2	6	6	8	0	0	2	138
	2학기	31	1	1	5	0	4	3	2	6	4	0	3	0	2	62
	합계	118		20		15		10		22		11		4		200
2학년	1학기	0	6	0	6	0	2	6	1	0	2	0	1	0	1	25
	2학기	0	2	0	3	0	2	0	2	0	3	1	0	0	1	14
	합계	8		9		4		9		5		2		2		39
3학년	1학기	10	2	2	4	6	2	3	4	3	2	0	2	1	0	41
	2학기	2	1	0	5	0	5	0	3	0	2	0	2	0	1	21
	합계	15		11		13		10		7		4		2		62
4학년	1학기	5	3	6	3	0	2	2	1	2	1	0	0	0	1	26
	2학기	0	2	0	0	0	1	2	0	2	0	0	0	0	0	7
	합계	10		9		3		5		5		0		1		33
5학년	1학기	9	0	7	0	6	0	3	2	3	0	0	1	2	0	33
	2학기	2	0	4	0	1	1	5	0	3	0	2	0	1	0	19
	합계	11		11		8		10		6		3		3		52
6학년	1학기	2	0	12	0	0	2	0	0	0	0	0	0	0	1	17
	2학기	11	0	3	0	0	1	4	1	5	0	0	0	0	0	25
	합계	13		15		3		5		5		0		1		42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학교안전사고 현황(2022년)

○ 활동시간별

활동시간별							합계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휴식/청소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20	6	2	1	0	0	0	29

○ 활동장소별

장소별					합계
강당(체육관)	교 실	건물 내	운동장(체육시설)	기타	
16	4	1	7	1	29

○ 사고 형태별

형태별						합계
미끄러짐	넘어짐	접촉	물체와의 충돌	찔림/베임	기타	
6	3	7	10	0	3	29

○ 사고 행동별

행동별							합계
공부	구기	육상	기타 (기구/매트)	보행/주행	장난/놀이	기타	
0	16	1	0	2	5	5	29

○ 학교안전사고 분석 결과

- 체육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은 편임
- 학급 담임교사 및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야함.
- 2021년 24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소폭 늘었음. 2022년부터 전면 등교수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음. 안전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2022년)

○ 학교안전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1. 생활안전

조사문항		구분	태봉초등학교	포천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외부추락방지장치 설치	설치(%)	V	97.6	89.6	82.8
		일부설치(%)		0.0	2.7	4.9
		미설치(%)		0.0	2.2	3.9
		해당없음(%)		2.4	5.5	8.3
	손끼임 방지장치(건물현관)	모두 설치(%)	V	80.5	82.0	75.6
		일부 설치(%)		12.2	10.5	14.2
		미설치(%)		7.3	7.6	10.2
	손끼임 방지장치(교실)	모두 설치(%)		53.7	55.2	51.4
		일부 설치(%)		4.9	16.4	17.2
		미설치(%)	V	41.5	28.4	31.4
	환기장치 설치여부(급식실)	설치(%)	V	95.1	86.3	85.6
		미설치(%)		4.9	2.2	3.5
		해당없음(%)		0.0	11.5	11.0
	환기장치 설치여부(조리실)	설치(%)	V	95.1	94.6	94.2
		미설치(%)		2.4	0.2	0.4
		해당없음(%)		2.4	5.2	5.4
교육환경	학교안전 관련 교직원간 협의횟수 ※ 1학기 기준 응답값 * 2	횟수(회)	2.0	3.9	4.7	4.8
	학교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의횟수 ※ 1학기 기준 응답값 * 2	횟수(회)	2.0	2.0	2.7	2.3
	학사일정별 교육활동 안전대책 수립	모두수립(%)	V	100.0	97.3	95.8
		일부수립(%)		0.0	2.7	4.1
		미수립(%)		0.0	0.0	0.1
	학사일정별 사전안전교육 실시	모두실시(%)	V	95.1	99.0	98.5
		일부실시(%)		4.9	1.0	1.4
		미실시(%)		0.0	0.1	0.0
	교직원의 안전관련 역할,임무 인지 및 공유	모든교직원(%)	V	97.6	97.7	97.4
		일부교직원(%)		2.4	1.8	2.1
		안전담당자만 공유(%)		0.0	0.4	0.5
		미공유(%)		0.0	0.0	0.0
	안전부(장) 전담	겸임(%)	V	85.4	78.7	80.8
		전담(%)		14.6	21.3	19.2
	안전관련 동아리 운영	운영(%)		4.9	11.4	12.1
		미운영(%)	V	95.1	88.6	87.9
	안전관련 행사(캠페인 등) 운영	운영(%)		80.5	84.4	79.1
		미운영(%)	V	19.5	15.6	20.9
	안전교육용 온라인 자료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V	95.1	84.5	84.0
		공공기관 자료(%)	V	75.6	65.6	54.5
		민간 교수학습 자료(%)	V	39.0	40.6	37.2
		SNS(%)	V	53.7	65.3	62.5
		기타(%)		22.0	30.1	32.3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반영 여부	반영(%)	V	95.1	94.6	94.4
		미반영(%)		4.9	5.4	5.6

☞ 분석 결과

- 생활안전 분야의 안전수칙을 대부분 잘 준수하고 있음.
- 손끼임 방지장치(교실)는 올 해 예정된 교실 출입문 교체 사업 후에 설치할 예정임.

2. 교통안전

조사문항		구분	태봉초등학교	포천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교내 보차도 분리	물리적분리(%)	V	78.0	81.6	73.4
		임시분리(%)		19.5	13.5	18.2
		미분리(%)		2.4	4.9	8.4
	교외 보차도 분리	분리(%)	V	68.3	85.7	75.8
		일부분리(%)		19.5	11.4	18.5
		미분리(%)		12.2	2.9	5.7
	교외 무단횡단 예방시설(보도용 방호울타리 등) 설치	모두설치(%)	V	61.0	71.6	61.5
		일부설치(%)		22.0	20.1	24.7
		미설치(%)		17.1	8.3	13.8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 유・초・특수학교 대상	모두지정(%)	V	93.1	90.4	87.5
		일부지정(%)		6.9	7.8	10.0
		미지정(%)		0.0	1.7	2.5
	학교주변 과속방지 시설 설치	모두설치(%)	V	87.8	83.0	77.7
		일부설치(%)		9.8	13.5	17.2
		미설치(%)		2.4	3.5	5.0
	학교주변 과속단속장비(CCTV) 설치	모두설치(%)	V	78.0	69.6	62.5
		일부설치(%)		14.6	17.2	19.5
		미설치(%)		7.3	13.2	18.0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단속장비(CCTV 등) 설치	모두설치(%)		61.0	60.7	49.9
		일부설치(%)		22.0	20.1	22.0
		미설치(%)	V	17.1	19.2	28.0
	통학버스 운행	운행(%)		43.9	22.0	38.6
		미운행(%)	V	56.1	78.0	61.4
	통학버스 동승자여부 ※ 유・초・특수학교 대상	있음(%)		94.4	94.6	96.2
		없음(%)		5.6	5.4	3.8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 유・초・특수학교 대상	설치(%)		88.9	92.8	93.9
		미설치(%)		11.1	7.2	6.1
	서행표지판 설치여부	설치(%)		75.6	70.7	66.1
		미설치(%)	V	24.4	29.3	33.9
교육환경	등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V	97.6	96.8	95.4
		미실시(%)		2.4	3.2	4.6
	하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V	82.9	81.4	84.3
		미실시(%)		17.1	18.6	15.7
	등·하교 시 승·하차 공간 마련	마련(%)		63.4	47.7	52.9
		부재(%)	V	36.6	52.3	47.1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2021)	사고건수(건)	0.0	0.0	0.14	0.09
		사망학생(명)	0.0	0.0	0.0	0.0
		부상학생(명)	0.0	0.0	0.13	0.08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반경 300m 이내(건)	0.0	0.54	1.95	1.79

☞ 분석 결과

- 교통안전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 서행표지판이 없으나 어린이 안전 구역 표시가 되어있음.
-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설치를 건의할 예정임.
- 등・하교 시 승하차 공간에 대한 설치를 2022년에 건의하였음.

3. 폭력 및 신변안전

조사문항		구분	태봉초등학교	포천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인근 경찰서에서 학교까지의 도착시간	5분 이하(%)	V	65.9	59.9	67.3
		6~10분(%)		22.0	32.7	26.7
		11~15분(%)		9.8	5.9	4.5
		16~20분(%)		2.4	1.2	1.2
		21분 이상(%)		0.0	0.3	0.3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중복응답)	학교 출입구(교문) 부근(%)	V	29.3	52.0	67.1
		학교 중앙현관 부근(%)		80.5	64.5	45.3
		관리하지 않음(%)		0.0	0.9	0.9
	학교출입구(교문) 개수 및 관리되는 출입구 개수	총 출입구(개)	3.0	2.4	2.2	2.1
		관리되는 출입구(개)	3.0	1.5	1.8	1.7
	CCTV 안내판 설치	설치(%)		97.6	95.2	95.0
		미설치(%)	V	2.4	4.8	5.0
	출입·방문절차 안내판 설치	설치(%)	V	100.0	95.0	94.0
		미설치(%)		0.0	5.0	6.0
	[실내]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실내 전체(대)	0.0	4.0	9.5	10.9
		실내 200만 이상(대)	0.0	4.0	9.1	10.2
	[실외]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실외 전체(대)	15.0	10.3	12.3	12.3
		실외 200만 이상(대)	15.0	10.3	11.8	11.8
교육환경	학생보호인력 운영여부	운영(%)	V	90.2	87.4	83.9
		미운영(%)		9.8	12.6	16.1
	학생보호인력 운영시간(시간/일)	시간(시간)	6.0	4.2	5.1	7.0
	외부인 통제 및 학생보호 인력 운영 어려움 여부	어려움 없음(%)	V	70.7	72.1	79.8
		어려움 있음(%)		29.3	27.9	20.2
	상담교사,전문상담인력 운영여부 ※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운영(%)	V	62.2	80.1	72.8
		미운영 (지역 Wee센터 등 활용)(%)		29.7	15.2	22.5
		미운영 (조치사항 없음)(%)		8.1	4.7	4.7
	상담교사,전문상담인력 운영시간(일/1주) ※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시간(일)	5.0	3.8	4.5	4.6
	연간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건수(건)	0.0	0.1	0.1	0.1
	학교주변 1km 내 성범죄자 수	범죄자 수(명)	0.0	0.6	1.4	1.4
		조회불가(%)		22.0	19.6	17.7
	학교 실내체육시설 외부 개방 여부	개방(%)		22.0	12.7	19.7
		미개방(%)	V	53.7	76.2	68.3
		해당시설 없음(%)		24.4	11.1	12.0
	학교 실내체육시설 개방 시, 외부인/학생 분리대책 여부	시간 분리(%)		100.0	91.7	93.9
		동선 분리(%)		44.4	14.7	13.0
		기타(%)		0.0	3.4	2.3
		없음(%)		0.0	3.6	2.1

☞ 분석 결과

- 폭력 및 신변안전 분야의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4. 재난 안전

조사문항		구분	태봉초등학교	포천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인근 소방서에서 학교까지의 도착시간	5분 이하(%)	V	56.1	44.6	49.9
		6~10분(%)		26.8	42.2	38.1
		11~15분(%)		9.8	10.2	8.7
		16~20분(%)		4.9	2.2	2.3
		21분 이상(%)		2.4	0.8	1.0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로 교내 화재 발생 시 대응 가능여부	모든 건물 대응 가능(%)		90.2	95.9	94.4
		일부 건물 대응 가능(%)	V	9.8	4.0	5.4
		대응 불가(%)		0.0	0.1	0.3
	피난안내도 게시(본관)	층별게시(%)	V	92.7	89.8	82.6
		건물별게시(%)		7.3	8.1	12.3
		미게시(%)		0.0	2.1	5.1
교육환경	전교생 대상 재난대비훈련 실시횟수	전년도(회)	3.0	2.6	3.4	3.8
		올해(회)	3.0	2.9	3.6	4.0

☞ 분석 결과

- 재난 안전 분야의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5. 직업안전

조사문항		구분	태봉초등학교	포천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실험실습시설 보호구 지급 및 사용여부 ※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모두사용(%)	V	94.6	88.3	88.1
		일부사용(%)		5.4	10.3	9.9
		사용안함(%)		0.0	0.6	0.5
		시설없음(%)		0.0	0.9	1.5
	실험실습시설 분진제거장치 설치여부 ※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설치(%)		37.8	34.6	30.9
		일부설치(%)		5.4	12.6	13.5
		미설치(%)		40.5	35.1	36.1
		시설없음(%)	V	16.2	17.6	19.5
	실험실습시설 유해화학물질 환기장치 설치여부 ※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설치(%)	V	73.0	71.8	69.1
		일부설치(%)		13.5	14.6	16.0
		미설치(%)		8.1	8.9	9.7
		시설없음(%)		5.4	4.7	5.3
	실험실습시설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설치(%)	V	91.9	88.7	87.8
		일부설치(%)		8.1	8.8	9.5
		미설치(%)		0.0	1.0	0.9
		시설없음(%)		0.0	1.6	1.7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내 별도보관함 설치여부 ※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설치(%)	V	97.3	89.0	88.8
		일부설치(%)		2.7	7.4	7.3
		미설치(%)		0.0	0.6	0.5
		시설없음(%)		0.0	3.1	3.4

☞ 분석 결과

- 직업 안전 분야의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6. 응급처치

조사문항		구분	태봉초등학교	포천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전국
학교시설환경	심장자동충격기(AED) 설치여부	전체건물(%)	V	73.2	60.5	54.6
		일부건물(%)		17.1	32.1	37.6
		미설치(%)		9.8	7.4	7.8
교육환경	보건교사 운영여부	운영(%)	V	92.7	84.0	77.1
		미운영(%)		7.3	16.0	22.9
	보건교사 운영시간(일/1주)	시간(일)	5.0	4.84	4.94	4.8

☞ 분석 결과

- 응급처치 분야의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 학교 안전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모든 분야의 학교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 필요시 학교 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즉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겠음.

조치 계획

- 시·도교육청에 요구·협의할 사항
  -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보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요구·협의할 사항
  - 지자체 연계(소방서 연계 등)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련된 사항
- 학교 자체 계획
  - 학교 내외의 각종 시설 안전 점검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안전교육 실시
  -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교육의 강화 및 가정연계 교육실시

PART III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현황 및 문제점

-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도로에 차량이 많고 교통이 복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고,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고 학교 주변에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함.

주요 내용

- 교내 SAFE-ZONE 지정 및 운영

1) 목적 : 일과 중 학교 시설(운동장 등) 개방에 따른 절대 안전 대책 강구
2) 이용 대상 : 조기 등교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
3) 지정 장소 : 도서실
4) 운영 방법 : 외부인 접근 제한구역 표시 및 출입 제한
SAFE-ZONE 안전 담당자 배치(사서교사)
5) 운영 담당자 : 해당 교실 담당자

- 교내 외 순찰 강화

1) 활동일 : 연중(휴일, 휴업일 포함)
2) 활동 내용
① 평일 등교일
-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등) 활용을 통한 일과 시간 중 교내외 순찰 강화.
② 휴업일, 공휴일, 방학 등
- 휴일, 방학 중 학교 및 학교주변 취약지구 순찰
- 순찰 담당 : 근무 교사 및 학교 당직자

○ 교내 CCTV 설치 운영

1) 목적 :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

2) 설치 장소 : 주요 학교 출입로 및 안전생활 취약지구・시설
(2018년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3) 활용방법 : 모니터 설치 실시간 감시(주간: 지킴이 초소, 야간: 숙직실)

○ 학생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제공

- 학생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등・하교 시 학생 신변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녀 신변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

학교 안전교육 일정

운영 주제	운영 내용	대상	일시
안전점검의 날	▹ 안전의 날 관련 교육 실시	전교생	매월 4일
7대 안전교육	▹ 학년별 7대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학급별 실시	전교생	연중
나침반 안전교육	▹ 각 학급에서 5개의 주제(생활, 교통, 재난, 보건, 신변·폭력/약물·사이버중독)를 가지고 매일 5분 안전교육 실시	전교생	3~7월, 9~1월
	▹ 가정 연계 교육자료 배포	학부모	
학교안전주간 운영	▹ 학급별 안전교육 실시	전교생	학기 초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연수원 혹은 경찰서 연계 교육	전교생	4월-6월
화재대피	▹ 민방위의 날 전국화재대피 훈련	전교직원 전교생	4월 예정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각종 재난상황 시 대응요령 교육 실시	전교직원, 전교생	10월 예정
체험학습 안전교육	▹ 학년별 체험학습 사전 및 현장 안전교육 실시	전교생	연중
소방합동훈련	▹ 화재예방 및 화재 시 대피 및 대응 요령 소홀 소방서 합동 훈련	전교직원, 전교생	5월 예정
민방공 대피훈련	▹ 민방위의 날 적 공습 시 대피훈련 실시	전교직원, 전교생	미정 (민방위의 날)
여름방학 대비 안전교육주간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여름방학 생활안전, 수상 안전, 물놀이 안전 교육 등	전교생	7월
겨울방학 대비 안전교육주간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겨울방학 생활안전, 폭설 대비, 겨울 스포츠 안전 교육 등	전교생	1월

나침반 교육 운영계획 (학년교육과정에 반영)

- 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체험 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 방침

1) 화재안전, 보건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5개 분야로 실시
2) 조·종례시간 및 교과 창체 수업의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담임이 교육
3) 운영기간은 2023. 3. ~ 2024. 1. 까지로 운영한다.
4) 운영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실시한다. (첨부자료 참고)

- 세부 추진 계획

	요일					비 고
	월	화	수	목	금	
내용	화재안전	보건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간	08:55-09:00	08:55-09:00	08:55-09:00	08:55-09:00	08:55-09:00	

- 기대효과

1) 학생들의 위기대처능력이 강화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2) 학생들의 눈높이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안전교육 효과의 극대화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재난대비 비상훈련
	교내	교외		
3월	*입학식 02(수) *시업식 02(수) *진단활동주간 06(월)~10(금) *1학기 학급자치회선거 14(화) *학부모총회 15(수) *학교폭력예방교육주간 20(월)~24(금)		학교 교내생활 안전교육 미세먼지 교육	
4월	*학부모상담주간 03(월)~07(금) *학교폭력실태조사 03(월)~28(금) *친구사랑주간 10(월)~14(금) *장애인식개선교육주간 17(월)~21(금) *재난대피훈련주간 17(월)~21(금)	*5학년 현장체험학습 13(목) *3학년 현장체험학습 20(목) *1학년 현장체험학습 21(금)	화재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소방훈련/지진대피
5월	*학생과학탐구주간 01(월)~04(목) *태봉어울림한마당(5~6학년) 02(화) *태봉어울림한마당(3~4학년) 03(수) *태봉어울림한마당(1~2학년) 04(목) *인성교육주간 15(월)~19(금) *인권교육주간 22(월)~26(금) *소방합동훈련 24(수) *흡연예방교육주간 29(월)~02(금)	*2학년 현장체험학습 23(화) *4학년 현장체험학습 25(목) *6학년 현장체험학습 30(화)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민방공 대피훈련
6월	*생명존중교육주간 12(월)~16(금)		물놀이 안전 예방 지도	
7월	*학교폭력실태조사 03(월)~07(금) *2학기 학생자치회선거 04(화) *여름방학식 14(금)		폭염 관련 예방 지도	민방공 대피훈련
8월	*여름개학식 23(수) *2학기 학급자치회선거 29(화)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지도	
9월	*학교폭력실태조사 4(월)~8(금) *학교폭력예방교육주간 4(월)~8(금) *장애인식개선교육주간 11(월)~15(금)	*3학년 현장체험학습 19(화) *5학년 현장체험학습 14(목) *2학년 현장체험학습 21(목) *4학년 현장체험학습 26(화)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민방공 대피훈련
10월	*자체소방훈련주간 10(수)~13(금) *인권교육주간 16(월)~20(금) *학부모공개수업주간 16(월)~20(금) *학부모상담주간 23(월)~27(금) *사과데이교육주간 23(월)~27(금) *언어문화개선교육주간 30(월)~03(금)	*1학년 현장체험학습 6(금) *6학년 현장체험학습 12(목)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1월	*친구사랑주간 06(월)~10(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주간 20(월)~24(금)		화재 예방 지도 강화 미세먼지 교육	소방훈련/지진대피
12월	*학교폭력실태조사 04(월)~08(금) *2023 학생자치회선거 19(화)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민방공 대피훈련
1월	*종업식 12(금) *졸업식 12(금)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교육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생존수영 실시계획

학년	내용	실시예정일	시간	비고
3학년	○ 생존수영 이론교육	2023. 5. 22. ~ 2023. 6. 2.	4시간	이론교육
	○ 생존수영 실기교육	2023. 6. 7. ~ 2023. 6. 16.	10시간	실기교육
4학년	○ 생존수영 이론교육	2023. 6. 7. ~ 2023. 6. 16.	4시간	이론교육
	○ 생존수영 실기교육	2023. 6. 19. ~ 2023. 6. 26.	10시간	실기교육

(3학년)

3학년 1학기 이론교육(4차시)		
날짜 및 시간	5. 29.(월) 2시간	5. 31.(수) 2시간

3학년 1학기 실기교육(10차시)					
	6. 7.(수)	6. 9.(금)	6. 12.(월)	6. 13.(화)	6. 16.(금)
1~2교시	1, 2반	3, 4반	2, 3반	3, 4반	3, 4반
3~4교시	3, 4반	1, 2반	1, 4반	1, 2반	1, 2반

(4학년)

4학년 1학기 이론교육(4차시)		
날짜 및 시간	6. 14.(수) 2시간	6. 16.(금) 2시간

4학년 1학기 실기교육(10차시)					
	6. 19.(월)	6. 20.(화)	6. 22.(목)	6. 23.(금)	6. 26.(월)
1~2교시	3, 4반	1, 4반	3, 4반	1, 2반	3, 4반
3~4교시	1, 2반	2, 3반	1, 2반	3, 4반	1, 2반

재난 대비 훈련 연간계획

중점 훈련	추진 내용	목표	대상	일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지진 및 화재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피 훈련 ▹ 학년, 학생 상황에 맞는 체험형 재난 대응 훈련 ▹ 실제적인 기능 점검 및 안전 진단 훈련	1회	전교직원, 전교생	10월 예정
민방공 대피훈련	▹ 민방위의 날 적 공습 시 대피훈련	4회	전교직원, 전교생	미정 (민방위의 날)
소방훈련 지진대피	▹ 지진 화재 대피 및 대응 훈련 (1회 이상 소방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2회	전교직원, 전교생	1학기: (소방기관 합동) 2학기: (자체 훈련)

※ 학교 재난 대비 훈련 담당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 훈련 매뉴얼」(교육부)을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

안전약자(요보호학생) 현황 및 관리방안

- 안전약자(요보호학생) 명단은 별도 관리 (보건교사)
- 본교에는 2 학급의 도움반(특수학급)이 있음
  - 특수학급 교사(2명)에 의하여 명단 및 현황 관리
- 신학기 건강조사 등을 통하여 건강 문제(요보호학생)를 가진 학생을 파악
  -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 의한 개별 면담, 정기적인 건강상담 실시
  - 응급 상황발생 시 우선적으로 대피
- 도움반 학생 및 요보호학생 중 대피할 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대피 계획은 별도 수립

안전 문화 확산

- 학교 안전취약시설 정기 점검 실시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연계하여 실시
  - 교내외 순찰을 통한 안전취약시설 점검
- 학생·교직원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교육 실시
  - 학교 안전교육 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및 재난 대비 훈련 실시
- 학교 안전주간 운영
  - 담당자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행사, 사업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 체육행사, 과학행사, 진로행사,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각종 행사 시 계획 수립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행사 시작 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위기발생 시 대피로, 소화기 위치, 관련 안전교육 등
  - 학부모 연수 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 학교안전사고예보제 운영
  -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담임교사에 의한 월별 교육
  - 교육용 삽화 자료를 교실에 게시, 가정으로 안내장 발송 등
- 가정 내 자율 안전점검 홍보 (안내장 발송)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 학년 및 학급교육과정에 반영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 안전 점검을 실시
  -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하여 안전교육 및 시설물 안전 점검

–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

– 담당자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안내(가정연계)

– 학기 초 학교안전계획 안내, 안전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건강이상 학생 학교 통보 안내, 안전공제회 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각종 안전관련 안내장 발송 등

- 수상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운영 – 여름방학 대비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별도 계획 수립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학교안전교육 연간 계획(2023년)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계
기준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시간	12 이상		11 이상		8 이상		10 이상		6 이상		2 이상		2 이상		51 이상
교육과정 반영시수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계
1학년	1학기	14	14	4	0	9	3	0	8	5	2	2	0	0	2	63
	2학기	5	0	2	10	4	2	0	2	0	4	2	0	1	1	33
	합계	33		16		18		10		11		4		4		96
2학년	1학기	7	1	0	7	3	2	3	5	5	0	1	0	0	1	35
	2학기	2	2	1	3	2	1	1	1	1	1	2	0	1	0	18
	합계	12		11		8		10		7		3		2		53
3학년	1학기	13	0	3	6	0	4	5	4	0	4	0	2	3	0	44
	2학기	3	0	3	2	4	2	0	3	2	2	0	2	3	0	26
	합계	16		14		10		12		8		4		6		70
4학년	1학기	12	1	9	4	4	3	8	2	2	1	0	1	1	2	50
	2학기	0	2	1	2	1	1	0	2	2	1	0	1	0	1	14
	합계	15		16		9		12		6		2		4		64
5학년	1학기	10	0	7	0	5	0	6	1	4	0	2	0	2	0	37
	2학기	2	0	5	0	6	0	5	0	3	0	2	0	2	0	25
	합계	12		12		11		12		7		4		4		62
6학년	1학기	8	0	12	0	4	0	0	5	3	0	1	0	1	0	34
	2학기	5	0	2	1	4	0	0	5	3	0	1	0	1	0	22
	합계	13		15		8		10		6		2		2		56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2023년 예정)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39	24	63	39	24	63	100

※ 2023년은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3주기(2021~2023) 중 마지막 해에 해당함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3년 예정)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721	39	24	784	721	39	24	784	100	100

4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방침

○ 학교 출입지점 안전관리

1) 주차장쪽 후문(주 출입구) : 등교시간(~08:40)에 개방, 그 이후 폐쇄하며 14:00에 다시 개방한다.

2) 학교안전지킴이가 입출입자를 확인하고 통제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교직원 차량 입출 시

② 사전 허가된 학교 방문객의 차량 출입 시

③ 사전 허가된 업체의 물품 반입·반출을 위한 차량 출입 시

④ 사전 허가된 작업 차량 출입 시

⑤ 소방, 경찰, 구급차 등 긴급 상황에 필요한 경우

⑥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이 외 사전 허가가 없었지만 급한 용무가 인정되어 출입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 출입문 : 항시 잠가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객 출입관리

: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학교안전지킴이의 안내에 따라 지킴이 초소에서 '외부인 출입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발열체크 및 기타 방역관리를 해야한다.

물품 수령 방침과 절차

1) 식자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에 따라 각 물품별 해당 사용처로 배송기사가 배송할 수 있다.
2) 교직원의 사적 물품을 학교에서 수령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에서의 수령이 불가피할 경우 배송 예상 일시를 사전에 행정실에 알린다.
3) 식자재의 경우 급식실에서 수령하며, 영양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통학 안전 관리 방침

가. 학생 등하교 안전관리

1) 학생보호인력을 통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지도 실시
2) 학기 초등 전교생 교통안전교육 실시
3)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4) 교문 바로 앞 정차 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 지정 안내

나. 등하굣길 경찰관 안전 활동(포천경찰서 협조)

1) 교문 바로 앞 정차 금지
   - 학생들은 송우중 앞, 버스정류장 큰 길에서 내린 후 도보로 등교하도록 한다. 단, 환자 학생을 태운 차량은 미리 학교에 통보, 서행하여 학교 정문에서 하차하도록 조치
2) 스쿨존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서행 유도
3)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유도 및 견인조치
4) 통학로 주변 유해물 및 불법 현수막 제거

교내 차량 통행 및 주차관리 방침

가. 교내 차량 통행

모든 차량은 주차장쪽 후문으로 출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동장 쪽으로의 진입을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운동장 진입을 허가한다.

1) 비상상황 발생으로 긴급차량 출입 시(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2) 사전 계획된 교육활동으로 차량 출입을 허가한 경우
3) 사전 허가된 작업, 배송 차량의 출입 시
4) 소방, 경찰, 구급차 등 긴급 상황에 필요한 경우
5) 이 외 사전 허가가 없었지만 급한 용무가 인정되어 출입이 필요한 경우

나. 주차관리 방침

1)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 교내 차량 통행’이 허가되는 경우 다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다.
2) 출퇴근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교직원은 행정실에서 ‘교직원 차량명부’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모든 교직원 차량은 요일제 운행 방침에 따라 교내 주차를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차량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고 교내에 주차할 수 있다.

① 자녀 양육 상 출퇴근길 유아 동승 시

② 교육활동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하여 사전에 허가된 경우

③ 이 외 사전 허가가 없었지만 급한 용무가 인정되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4) 학교안전지킴이는 순찰 및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출입을 통제 · 관리하며, 미등록 차량 및 허가 없이 교내에 주차한 차량 발견 시 '무단주차 경고장'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주차가 불가함을 알린다.

○ 약품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관리 방침

가. 보건실 약품 관리

1) 보건실 관리 계획에 따라 약품은 학기당 2회 구입하며, 사용분은 즉시 보충하여 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약품은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투여하고, 반드시 보건교사가 직접 투여한다.

3) 약품 사용에 있어서는 응급처치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다하게 사용 하지 않는다.

4) 약품함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항시 잠가둔다.

나. 과학실 유해(위험/화학)물질 관리

1) 시약의 보관

구분	방법
화재의 위험이 있는 약품	• **황린** : 공기 중에선 자연 산화되며 물이 든 병 안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 **나트륨, 칼륨** : 공기 중에서 자연 산화되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므로 석유 속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 **휘발유, 알코올, 벤젠, 에테르** : 인화되기 쉽고 마개를 밀봉하여 화기에서 멀리 보관한다.
폭발 위험이 있는 약품	• **염소산칼륨, 중크롬산칼륨, 과망간산칼륨** : 탄소나 황의 분말과 섞어 마찰하면 폭발한다.
휘발성이 강한 약품	• **요오드, 빙초산, 농질산, 농염산** : 코르크와 고무를 부식하므로 유리마개로 막고 파라핀을 칠하여 밀폐한다. • **알코올, 나프탈렌** : 고무마개로 밀폐한다. • **휘발유, 벤젠, 클로로포름** : 코르크크 마개로 밀폐한다.
극약, 독약 맹독성 약품	• **염산, 수산화나트륨, 요오드 황산구리, 황린, 중크롬산칼륨, 질산, 황산, 염소산칼륨, 석탄산, 요오드포름, 무수아비산, 청산칼륨** : 극약이거나 맹독성을 띄고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라벨에 "위험"이라고 적색 글씨를 써두며 일반 시약과 별도로 보관하며 약품장의 문을 잠가둔다.

2) 약품 및 폐시약 보관설비

①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②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한다.

다. 기타 물품(식료품 등) 관리

'가', '나'를 포함한 각종 물품은 각 해당 부서 및 실별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 비상탈출구 및 2차 탈출구 관리 방침

1) 학교 비상대책반 중 현장대응반은 건물 1층 유리창문, 옥상문 등 비상시 2차 탈출구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민방공 훈련 시 비상탈출구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3)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비상시 건물 출입문으로 탈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1층 복도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 후 교실 안전관리 방침

1) 강사는 단위 수업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2) 강사는 수강 시간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방과후학교 수업 중에 위험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 철저하게 위험성을 알리고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수업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5)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 시작 후 바로 전화나 문자로 결석을 확인하도록 한다.
6) 강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학부모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에게 연락하고 책임있는 조취를 취하도록 한다.
7) 강사는 수업 중 학생 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한다.
8) 수업이 끝나기 전 학생들의 교실 밖 출입은 삼가며, 필요시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은 다음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돌봄교실 안전관리 방침

1) 출입문에 손가락 끼임 방지물을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 한다.
2) 외부에서 교실에 들어왔을 때 불쾌하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투명 창을 설치하여 아동들의 안전 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돌봄전담사는 아동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공간은 없는지 확인하며 아동들의 활동을 수시 점검한다.
4) 실내온도는 18도 이상, 28도 이하를 권장하도록 한다.

5) 다음의 안전주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교실	• 뾰족한 문구나 교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 교실에서는 걸어 다니고 다른 친구의 발을 걸지 않는다. • 창틀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 난간에 기대어 앉지 않고,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는다. • 실험・실습 시에는 반드시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 급・간식 시간에 젓가락이나 포크로 장난하지 않는다.
복도·계단	• 뛰지 않고 오른쪽으로 조용히 걷는다. • 계단 난간을 넘거나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한 계단씩 이용하며,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
화장실	• 화장실 입구에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킨다. •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우므로 뛰어다니지 않는다. •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나 발이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운동장	• 경기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서로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므로 놀이규칙을 지키도록 한다. •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여 부상을 예방한다. • 여름철에는 놀이기구가 강한 햇볕에 심하게 달구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준다.

○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안전관리 방침

1) 16:30~08:00 까지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전 신청과 허가에 따른 외부인의 학교 시설 이용 시 다음의 수칙을 따른다.

<시설물이용수칙>

①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은 학교 학생, 교직원의 이용 및 학교행사 등이 우선 할 수 없으며, 이런 사항이 없는 일시에 한하여 개방 및 이용이 가능하다.

② 사용 중 시설물(건물, 운동기구, 수목, 공작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원래 상태로 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 및 오물은 이용자가 되가져가며, 사용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깨끗이 청소해야한다.

④ 교내에서는 불을 사용한 음식 조리 등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 시설물은 학생들의 교육공간임을 명심하여 교내에서는 금연・금주해야 하며, 옷을 벗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 기타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이용자가 위 수칙을 어길 시 학교 당국은 해당 이용자 전부를 강제 퇴교시킬 수 있다.

○ 비상배낭 관리 지침

1) 대피를 요하는 교내 재난 및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한다.

2)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 및 보완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 비상배낭의 구성 >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지압붕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 과학 실험·실습 안전지도 방침

가. 사고의 예방과 대책 : "5분 안전교육"

① 실험실에서는 언제나 정숙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절대로 독단적인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것이 실험실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② 시약장 및 기구장의 내용물을 사용치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잠가두어 분실 사고를 예방하며, 준비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실험실이나 준비실의 청소, 정리 정돈은 지도교사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시약은 한 곳에 모아두기)

④ 실험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교사는 실험실 내에서 외출을 삼가고 실험지도시 항상 최종퇴청자는 지도 교사이어야 한다.

⑤ 실험을 마친 후에는 시약 기구 등을 정위치에 정리하고 수도꼭지의 누수, 전열기의 단선, 실내등의 소등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를 한다.

⑥ 실험실에서는 금연이 원칙이다.

⑦ 깨진 유리조각이나 성냥개비, 잔류 폐기 용액을 싱크대에 버리면 하수관이 막히거나 부식되므로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⑧ 실험실에서는 지도교사라 할지라도 혼자서 실험하지 않도록 한다. 교사나 학생의 사전 실험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실험 시, 사고에 대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인 이상이 실험실 내에 함께 있어야 하며 부득이 혼자서 실험할 때는 실외에 있는 사람에게 실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

⑨ 실험 시에는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옷이 두껍거나 옷자락이 길면 시약병이나 기구를 떨어뜨리기 쉽고 옷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⑩ 실험 중 음료수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음식물을 실험실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야 하며, 음식물을 실험실에 방치해 두거나 약품을 음료수 병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실험실에서의 응급처치

① 화상을 입었을 때

뜨거운 유리관이나 불에 데었을 때에는 차가운 물로 충분히 씻어 열을 빼고, 와세린, 아마니유와 석회수의 혼합액 또는 피크린산의 포화수용액을 바른다.

② 손에 부상을 입었을 때

상처부위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로 씻고 가벼운 상처인데 피가 멈추지 않을 때는 염화제 2철의 수용액을 바른다.

③ 강산이 피부에 묻었을 때

물로 충분히 씻은 다음 묽은 중조용액(소다)으로 씻는다. 눈에 들어갔거나 옷에 묻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중화시킨다.

④ 강염기가 피부에 묻었을 때

물로 충분히 씻은 후 묽은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씻는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어 낸 다음 2%의 붕산수용액으로 씻는다.

⑤ 염소가스를 마셨을 때

편한 자세에서 심호흡을 하고 알코올 증기를 흡입한다.

※ 이상의 응급조치는 가벼운 부상일 때 가능한 것이며 중상일 경우는 지체없이 응급조치를 하여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⑥ 실험실에서의 화재나 대피가 필요한 안전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다음의 대피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한다.

- 교사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동들을 인솔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들은 앞 뒷문을 이용하여 질서있게 대피한다.
- 실험실의 앞, 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도록 한다.
- 반드시 안전대피요령을 실험실 사용전에 1회 이상 시연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체육활동 운영 방침

- 학교체육활동 전 · 중 · 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 신체활동은 학생의 발달단계, 개인별 체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강도 활동을 시작으로 점진적 강도 조절
- 가급적 단체운동은 지양하고, 개인운동 중심의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
- 실내 공간을 활용한 교육 활동 전개 시 모든 창문 상시 개방을 통해 충분한 환기 유지
- 활동 전·후 5분 안전수칙 교육 및 이행 여부 지도
- 체육활동 관련 용품은 개인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기구 등은 일상소독 실시

가. 수업 전

1) 실내(체육관, 강당 등)의 경우 상시 환기 유지
2) 활동 장소 체온계, 손소독제, 비누(세면장) 비치 현황 확인
3) 건강상태(기저질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지도

4)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5분 교육
5) 부상 등으로 수업 참관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 장소 지정
6) 수업 중 바닥에 침을 뱉지 않도록 사전 교육

나. 수업 중
1) 학생 간 충분한 공간 유지(2m(최소 1m) 이상)
2)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동 강도 조절
3)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4) 수업 진행 시 감염 유발 행동(근거리 설명(대화) 및 접촉) 금지
5) 상시적인 수동감시체계 운영(학생 행동 관찰)
6) 본인의 얼굴(눈, 코, 입 등)을 만지거나 접촉 금지(수건 사용)
7)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수시 손 소독 실시

다. 수업 후
1) 개인별 건강 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확인
2) 건강 상태 이상 학생 발생 시 즉각 학교 내 보고체계에 따른 조치
3)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지도

PART IV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 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학생 심리지원

가. 「Wee Project」 상담 연계 절차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위(Wee)클래스 (단위학교)	⇒	위(Wee)센터 (포천교육지원청)	⇒	위(Wee)스쿨(경기새울학교) 가정형 · 병원형 위(Wee)센터
잠재적 위기학생의 조기진단 및 대처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 지원		고위기 학생의 위탁 교육

나. 「Wee Project」 역할 및 기능

위(Wee) 클래스 (1차)		• 단위학교 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배치 • 개인상담/집단상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잠재적 위기학생에 대한 초기 진단 및 대처 • 위(Wee)센터(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
위(Wee)센터 (2차)		• 교육(지원)청 내 위(Wee)센터 설치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 One-Stop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 지원 •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
3 차	위(Wee) 스쿨	•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료 및 교육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기관 •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전문가팀 배치 •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위(Wee)센터	•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 · 교육 · 보호 기능을 가진 기숙형 위탁 대안 교육 기관 •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기관 운영 •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병원형 위(Wee)센터	• 정서 · 심리적으로 고위기 학생 증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병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 우울증 및 정서 불안 등으로 정서 ·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폭 피해 및 위기 학생, 자살 시도 및 자해 등 긴급 사안 발생 관련 학생 대상 운영 • 정신과적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치유 및 치료 기능

다. 연계활동

가. 목적 : 고위험군 학생은 Wee센터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상담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심층적인 진단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추후 결과 추이를 보며 학교와 연계 상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나. 대상 : 학생 및 학부모

다. 장소 : 해당 연계 기관

라. 추진내용

내용	대상	일정	장소	방법	내용
고위험군 학생 연계	-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개인상담 중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학생	연중	정신건강 복지센터	- 학부모 동의를 얻은 뒤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고 추후 결과추이를 보며 학교와 연계 상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	-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를 권장하나, 비동의할 경우 교내 Wee 클래스에서 상담
외부연계기관 협력체계구축	상담유관기관 (포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연중	상담실	- 전화문의, 사이트 방문을 통한 주요사업 및 지원 가능한 자원 확보 후 필요시 즉시 연계, 학부모에게 기관정보제공	- 상담유관기관과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담 망을 구축

참고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내용	유치원	1.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3.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내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4.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손씻기와 소득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3. 실험·실습실 및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아동학대 포함)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1.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6.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고등학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교육 방법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참고2 안전사고관리지침 해설서

1. 상황파악·전파

❑ 환자 상태 파악

○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행동과 주변환경, 추가위험(2차 피해) 여부 파악
(필요 시 피해 부위 사진 촬영)

○ 상태 파악 시 교내 응급처치 여부 및 응급환자* 여부 파악 필요

* 응급환자 여부 파악 방법 : 의식소실, 호흡곤란, 과다출혈 등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참조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 최초 발견자는 담당교사* 또는 보건교사 등 인근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상황전달

* 담당교사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를 의미

최초 발견자	세 부 내 용
학 생	• 인근에 있는 최초 발견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교직원	• 보건교사와 담당교사에게 상황전달 • 상황 전달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는 등 질서 및 생활지도 수행

❑ 생명 위급상황

○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신고 후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구 분	세 부 내 용
신고상황	• 의식소실 등 환자 상태가 위급 시 119 즉시 신고 •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119 신고(문의)
전달내용	• 사고 장소, 주요 건물, 사건/사고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응급처치 내용, 다른 질문이 없는 지 확인
주의사항	• 먼저 전화를 종료하지 않음 • 구조대가 출동 후 관련 정보를 다시 물을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2. 응급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상처, 코피, 탈구, 염좌 등 [붙임 #2] 참조

○ 병원 이동(필요 시)
- 교내 응급처치 결과 추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피해학생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
- 학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 또는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 등으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 병원 이동 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담당 교직원을 선정하여 병원 동행
- 병원 이동 시 필요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전화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병원 이동 중 2차 사고가 우려될 경우 119 구조대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직원이 이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함

구 분	주 의 사 항
1	• 부상자의 몸을 움직일 때와 옮길 때는 가급적 환자의 움직임이 적게 한다.
2	• 이송 완료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3	• 2인 이상이 이송을 할 경우, 반드시 리더를 정하여 이송한다.

❑ 생명 위급상황

○ 2차 피해 우려 확인
- 현장이 위험할 시 피해 학생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 척추손상 등 중증 부상자의 경우 무리한 이동 삼가

○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119 구조대 도착 전 생명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장 먼저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이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실시 전 의식, 호흡, 맥박 등 확인
- 의식이 없을 시 기본소생술 먼저 시행, 의식이 있을 시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호흡기질환, 출혈 등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응급처치가 어려울 경우 피해 부위 촬영 사진을 119 구조대에게 공유하여 지시에 따름

○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교육시설의장, 학부모에게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병원 이동 시 동행할 담당 교직원 선정

※ 정보 전달방법 :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쳐서, 응급처치 결과 또는 진행 상항 등 전달

3. 상황정리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교내 응급처치

구 분	세 부 내 용
주의사항 안내	•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결과 및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할 경우 피해 학생과 해당 담임교사에게 안내
응급처치 및 상황기록	• 사고 현황 등은 사고 발생 상황을 관찰했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교직원이 작성 • 사고현황 작성방법 :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피해 학생 상태, 처치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상황별 응급처치 결과는 보건일지에 보건교사가 작성 • 보건교사 부재 등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일지 작성 담당 교직원 선정

○ 병원 치료
- 아래 생명 위급상황 조치사항 시행(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 전달,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병원 도착 후 치료경과 안내 후 피해 학생 인계
- 담당 의사가 피해 학생 스스로 귀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주의사항 안내 후 귀가 조치(학부모 동의 시)

❑ 생명 위급상황

○ 병원 이송 및 치료경과 상황전달
- 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에 대해 교육시설의장 또는 교감, 학부모에게 상황 전달

○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인계전까지 피해 학생 보호자 역할 대행
(학부모 외 피해 학생 친척 등 역할 대행자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 인계 후 교직원 학교 복귀 가능)

4. 보고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 교내 응급처치 : 보건일지 작성

○ 병원 치료

구 분	세 부 내 용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공제회 신고 • 병원 치료결과에 따라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후 신청

❑ 생명 위급상황

○ 보고기준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상황보고

구 분	세 부 내 용
교육청 (교육부)	• 사망 또는 장해(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상과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육청 선 유선보고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집계 시스템으로 사고 통지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이상의 소아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손상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붙임 #2 상황별 처치방법

❑ 일반생활 응급처치

○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둔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처치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4) 출혈이 멈추었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
     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 귓속의 이물

귓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9~130]

❑ 드레싱

○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 드레싱의 종류

1) **거즈** -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2) **접착 드레싱** -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3) **외상용 드레싱** -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댄다.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 붕대 용도

○ 붕대의 용도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2) 부목의 고정
3) 압박을 통한 지혈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5) 부기(浮氣) 예방

○ 붕대의 종류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삼각건 매듭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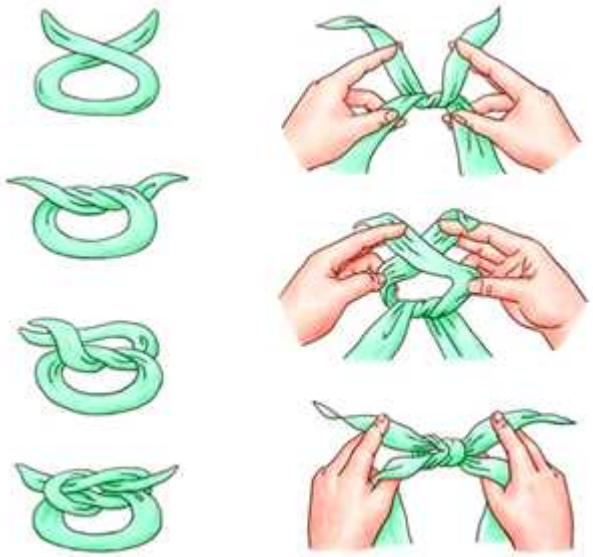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5~96]

○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머리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한다.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어깨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간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팔꿈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ㄱ자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을 감는다.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2]

❑ 탈구

○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 응급처치

1) 비상시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염좌

○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 증상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 응급처치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 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육염좌

○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 해서는 안된다.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 '삐었다' 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 부목사용의 목적

1)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2) 신경, 근육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한다. 즉, 부러진 뼈끝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3) 동통을 경감한다.

발목 발등골절	염좌	하퇴골(정강이와종아리)골절

○ RICE(Rest-Icing-Compression-Elevation)

휴식(Rest)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얼음찜질(Icing)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압박(고정)(Compression)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이 저린다거나, 손・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씩 혈액순환 확인)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 화상

○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 화상의 원인(연령별)

1) 3세 이하의 소아 - 가정에서 끓는 물
2) 3~14세 -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3) 15세 이상 - 작업상의 사고

○ 화상 응급처치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1) 핫팩 : 저온 화상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 화상의 종류와 증상

1도 화상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 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 • 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 • 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
2도 화상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 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 • 증상 :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 • 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

3도 화상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 피부의 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 손상된 화상 • 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 • 치료해도 대부분 흉터가 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 수도 있다

○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 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	• 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	• 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
원인	• 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	•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	• 근육 경련 (다리와 복부에 많음) • 따뜻하고 습한 피부 •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 • 많은 양의 땀 분비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 체온은 정상 • 빠르고 약한 맥박 • 심한 발한	• 체온상승 •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 의식을 점차 잃음 •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짐 •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
응급처치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 •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냄 •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 •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 • 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

○ 열경련(Heat Cramps)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원인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증상
다리와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증상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응급처치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 열사병(Heat Stroke)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얕고 빠른 호흡 등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 동상 및 저체온증

○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 요인이다.

○ 동상의 종류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2)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 동상 응급처치법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벌에 쏘였을 때

○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보고되는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르레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3)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한다.

-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신적인 과민반응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 과민성 쇼크의 경우 -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응급처치 -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예방 -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7~128]

붙임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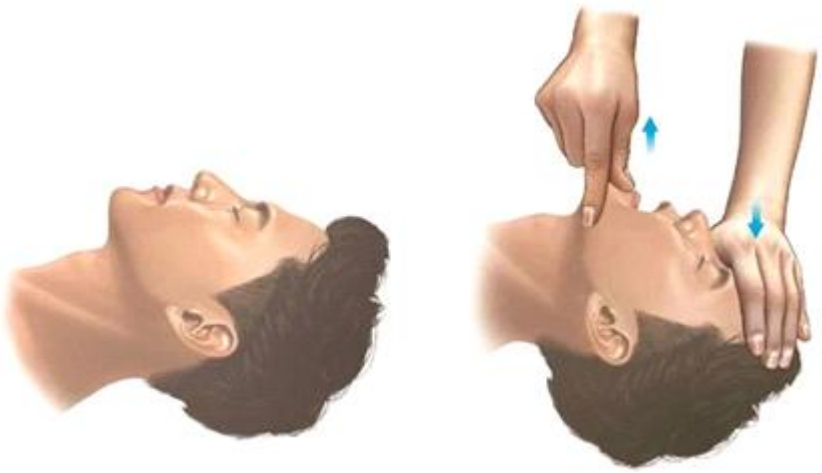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자동제세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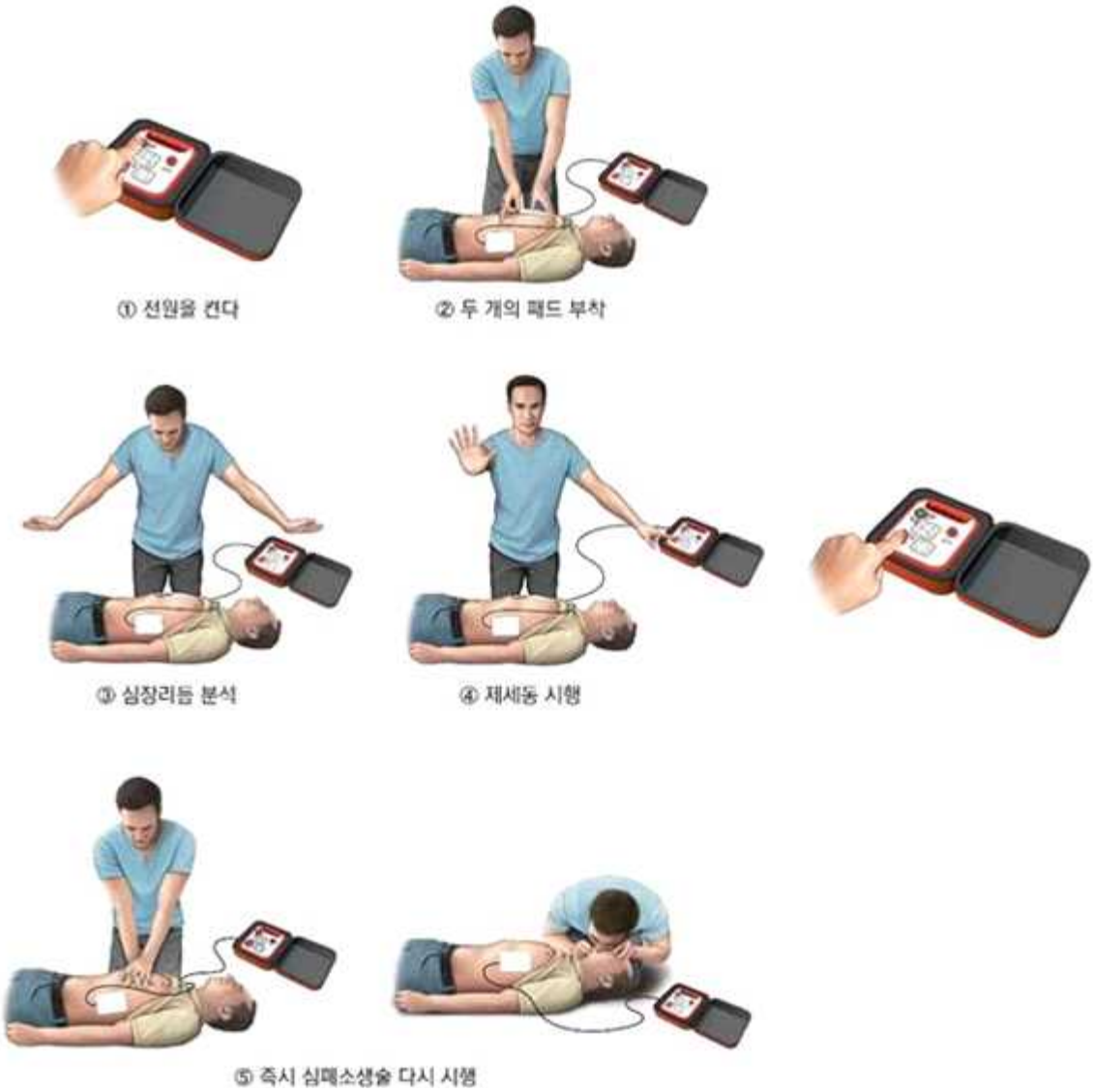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라면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골절

○ 골절의 형태별 분류

1) 분쇄골절 -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누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2) 나선골절 -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3) 사선골절 -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 골절의 원인별 분류

1) 외상성 골절 -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2) 특발성 골절 -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3) 피로성 골절 -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1) 빗장뼈(쇄골) 골절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쳐진다.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2) 위팔뼈(상완골) 골절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 무리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4) 아래팔뼈(전완골) 골절

증상

-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팔뼈골절)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6~108]

❑ 전기화상

○ 특징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3) 처치 -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 저체온증

○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 저체온증의 증상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3) 온몸을 떤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4) 몸이 저리다.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잃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 저체온증의 단계

1단계

오한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인체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체온이 점차 떨어져 32℃ 정도가 되면 오한은 멈춘다. 오한이 없으면 심각한 저체온 상태이다.

2단계

불안하고, 초조하며, 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나 목적을 잃게 되며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지며 시력도 떨어지게 된다.

3단계

기억력이 떨어지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의식이 희미해지며 손과 발의 끝부분이 얼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다.

4단계

맥박과 호흡이 느리고 약해지며 정신착란이나 혼수상태 호흡 중단과 같이 몸의 기능이 아주 빠르게 떨어지면서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

○ 저체온증의 온도별 변화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 32℃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일반사항	학교명						
	사건번호				보고일자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반	사고자구분
	지도교사		작성자	성명		연락처	

사고관련자	성명	
	학년반	
	사고관련자 구분	

사고내용	사고일자		사고부위	
	사고시간		사고당시활동	
	사고장소		사고의도성	
	사고형태			
	사고매개물			

사고개요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신명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